



시 보

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namwon.go.kr

제30호 2023. 6. 30(금)

선 람	기관의 장

공 고

- 남원시 공고 제2023-1187호 유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및 공고----- 1
- 남원시 공고 제2023-1369호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----- 8

회 람			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남원시 공고 제2023 - 1377호

『남원시 양성평등 기본조례』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 등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『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』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29일

남 원 시 장**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****1. 개정이유**

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(안 제44조)

(현행) 2023년 12월 31일 (변경) 2028년 12월 31일

3. 입법예고기간 : 2023. 6. 29. ~ 2023. 7. 19. (20일간)**4. 의견제출**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·개인은 2023년 7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(1)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)
- (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나. 의견 제출할 곳

- (우 55738) 남원시 시청로 60,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담당

다. 의견 제출 방법

- 직접방문 또는 우편발송(마감일 소인 유효), Fax(063-620-6744)
이메일(hls61001@korea.kr)

5. 기 타

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여성가족과(063-620-621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6. 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3. 6. .
 제출자: 남 원 시 장
 제안설명자: 여성가족과장

1. 개정이유

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양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의 연장(안 제44조)
 (현행) 2023년 12월 31일 (변경) 2028년 12월 31일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, 「양성평등 기본법」
- 나. 그 밖의 사항
 - 1) 입법예고
 - 기 간: 2023. 6. . ~ 2023. 7. . (20일간)
 - 결 과:
 - 2) 비용추계서: 비 추계대상
 - 3) 규제예비심사: 해당없음
 - 4) 성별영향평가: 해당없음
 - 5) 부패영향평가: 해당없음

남원시 조례 제 호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4조 본문 중 “2023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행	개 정 안
<p>제44조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<u>2023년 12월 31일</u>까지로 한다. 다만,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</p>	<p>제44조(기금의 존속기한) ----- ----- <u>2028년 12월 31일</u>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붙임

관련 법령

□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제4조(기금의 존속기한)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·운용되는 기금과 「지방공기업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,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15. 7. 24.>

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·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「지방재정법」 제 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 <신설 2015. 7. 24.>
[전문개정 2011. 5. 30.]

남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○ 비용추계 대상 여부

-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.

※ 「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4항제1호

제3조(작성대상)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.

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.

③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.

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. 단,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
2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.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

남원시 공고 제 2023 - 1369호

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

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 시행을 위해 「농어촌정비법」제9조 제3항 및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. 06. 28.

남 원 시 장 (인)

1.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

남원시장(남원시 시청로 60 남원시 농정과)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사업의 종류 :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5항 나목 배수개선사업

사업의 명칭 : 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

3. 사업예정지

전북 남원시 송동면 세전리 일원

4. 공람장소, 공람기간

사업명	열람장소	열람기간
세전지구 배수개선사업	남원시청 농정과	2023. 06. . ~2023. 06. (14일간)

5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제출기간 : 2023. 06. 28. ~ 2023. 07. 12.(14일간)

제출방법 : 서면 제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농정과(☎063-620-638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의견서

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명칭	
사업의 종류	
수용·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	
의견	

2023년 월 일

성명 : (인)

주소 :

남원시장 귀중

※구체적인 의견과 증거서류는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